



횡단보도, 교차로 우회전 시 “일시정지” 의무화

보도·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는 보행자 통행이 우선!

(변경 전) 가장자리 통행 의무
(변경 후)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 가능
[법칙] 4만원 범칙금 및 벌점 10점 부과



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다면 무조건 일시정지!

(변경 전) 통행 할 때
(변경 후) 통행 할 때 + 통행하려고 할 때
[법칙] 6만원 범칙금 및 벌점 10점 부과



스쿨존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선
보행자 횡단여부에 관계 없이!

무조건 일시정지!

[법칙] 6만원 범칙금 및 벌점 15점 부과

